

국제운전면허증



제네바조약 가맹국이 제네바조약에 의거해 발행한 형식의 면허증.

- 1 사이즈 : 148mm(가로) x 105mm(세로)
- 2 색 : 황색
- 3 발급국가 : 제네바조약 가맹국
- 4 조약명 : 「CONVENTION ON ROAD TRAFFIC OF SEPTEMBER 1949」
- 5 유효기간 :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
- 6 필수사항 : 성명/출신지/생년월일/주소 기재
- 7 사진 : 본인의 업급 사진
- 8 운전가능 차량구분 : 도장을 찍어 구분

국제운전면허증의 운전가능 차량구분

구분	운전할 수 있는 차량
A	2륜자동차(사이드카 장착 포함), 신체장애자동차량 및 등차 상태에서 중량이 400kg(900lbs)을 초과하지 않는 3륜자동차.
B	승용으로 운전석 외에 8인승을 초과하지 않는 좌석을 가진 자동차 또는 화물운송용으로 허용 최대중량이 3,500kg(7,700lbs)을 초과하지 않는 자동차. 이 종류의 자동차에는 경량 피견인차를 연결할 수 있음.
C	화물운송용으로 허용 최대중량이 3,500kg(7,700lbs)을 초과하는 자동차. 이 종류의 자동차에는 경량 피견인차를 연결할 수 있음.
D	승용으로 운전석 외에 8인승 이상의 좌석을 가진 자동차. 이 종류의 자동차에는 경량 피견인차를 연결할 수 있음.
E	운전자가 면허를 받은 B, C 또는 D의 자동차에 경량 피견인차 이외의 피견인차를 연결한 차량.

외국운전면허증 + 일본어 번역본

아래 5개국, 1지역은 여권과 자국의 면허증 및 일본어 번역본을 동시 제시하면 운전이 가능합니다.

스위스

독일

프랑스

벨기에

모나코

대만

일본어 번역본은 각 국가의 재일대사관/영사관, 또는 JFA(일반사단법인) 일본자동차연맹이 발행한 번역본만 유효합니다. 대만은 JFA(일반사단법인)일본자동차연맹, 아동관계협회*가 발행한 번역본만 유효합니다.

독일 면허증 소유자를 위한 일본어 번역은 독일 자동차 연맹(ADAC)에서도 발행되고 있습니다.

*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9조의 5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일본어로 작성된 번역본을 작성하는 자로서 아동관계협회(각 시·도·시 및 지정 포함)를 국가공인위원회가 적임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으로 지정하고 있음.

▲ [면허종류와 (유요기간)을 확인하시고 주의하여 신청해 주십시오.]

▲ [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각 시도부현에 있는 운전면허센터에 문의해 주십시오.]



일본어 번역본

Sample		日本語による翻訳文 JAPANESE TRANSLATION	
氏名 Name	R	GERMANY BENJITEN	姓 姓
生年月日 Date of birth	日	1975年2月22日	生 年 月 日
免許の種類 Licence category	種	ドイツ運転執照	種 種
免許の有効期限 Licence validity period	期	無期限 (AM, B, C)	期 期
免許の取得年月日 Licence acquisition date	日	2003年1月28日	日 日
免許の取得場所 Licence acquisition location	所	2025年1月22日	所 所
備考 Remarks	備	2025年1月22日	備 備

この翻訳文は日本語訳であり、元の免許と同等の効力を持ちません。
This document is a Japanese translation and does not have the same validity as the original license.

一般社団法人 日本自動車連盟
JFA
東京都中央区